

수원지방법원 2024. 11. 21 선고 2023나7112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4. 11. 21 선고 2023나71124 판결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. 5. 19 선고 2021가단67087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화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트러스트

담당변호사 정진규

변론종결 2024. 10. 10.

판결선고 2024. 11. 21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. 5. 19. 선고 2021가단67087 판결

주문

1.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1. 1. 체결된 160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1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주문 제1의 가, 나.항과 같다(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1. 1.경 체결된 1억 4,700만 원의 증여계약을 5,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2쪽 9행의 “확정되었다.” 다음에 “(이하 위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을 ‘이 사건 판결금 채권’이라고 한다)”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 2쪽 14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(2) C는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I(변경 전 상호는 ‘주식회사 J’이고, 이하 ‘소외 회사’라고 한다)를 운영하고 있는데, 소외 회사는 2019. 1. 1. 피고의 G은행 계좌(계좌번호 1 생략)로 1억 6,000만

원을 송금하였고, 피고는 같은 날 피고의 위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H은행 계좌(계좌번호 2 생략)로 1억 4,700만 원을 송금한 후, 2019. 1. 3. 위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1억 1,400만 원, 발코니 비용 14,650,000원, 후불이자 17,903,080원 등 합계 146,553,080원을 지급하였다.』

○ 제1심판결 3쪽 2, 3행을 “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, 2, 5 내지 7, 23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4호증의 각 기재, 제1심 법원의 H은행, G은행에 대한,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2023. 7. 25.자, 2024. 8. 2.자, 2024. 8. 7.자 각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”로 고쳐 쓴다.

2. 당사자의 주장 요지

가. 원고

C는 소외 회사로 하여금 소외 회사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C의 급여, 상여금 등 또는 차용금 1억 6,000만 원을 2019. 1. 1. 직접 처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잔금 등 지급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1억 6,000만 원을 증여하였다.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등에 사용된 돈의 출처인 소외 회사가 2019. 1. 1.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과 관련하여 그 경위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, 위 돈을 남편인 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. 그런데 위 증여 당시 C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,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¹⁾,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피고

피고가 2019. 1. 1. 소외 회사로부터 위 돈을 직접 송금받아 차용하였고, 이후 2019. 7. 24. 1억 원, 2019. 7. 29. 1,000만 원과 3,000만 원, 2019. 10. 2. 2,000만 원을 각 소외 회사로 송금하여 이를 변제하였을 뿐이므로,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와 C 사이의 2019. 1. 1.자 증여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.

3. 판단

가. 피고와 C 사이의 2019. 1. 1.자 1억 6,000만 원 증여계약 인정 여부

피고가 2019. 1. 1. 소외 회사로부터 1억 6,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잔금 등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.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3, 11, 24호증, 을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, 즉 ① 소외 회사는 C가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있는 사실상 C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, ②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2019. 1. 1. 피고의 위 G은행 계좌로 1억 6,000만 원을 송금하면서, 비고란에 ‘C’라고 기재하였던 점, ③ 2019. 1. 1.을 전후로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의 위 G은행 계좌로 여러 차례 금전이 송금된 내역이 존재하는데 각 송금내역의 비고란에 ‘피고’와 ‘C’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, 더욱이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의 위 G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돈이 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C는 2019. 1. 1. 무렵 이미 예금 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압류가 있던 상태로,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⑤ 한편 피고는 위 돈을 소외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본인이 차용하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소외 회사로 송금한 2019. 7. 29.자 1,000만 원과 3,000만 원의 각 받은통장 메모란에는 ‘피고’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, 2019. 7. 24.자 1억 원의 받은통장 메모란에는 ‘대표이사차입금’이, 2019. 10. 2.자 2,000만 원의 받은통장 메모란에는 ‘C’가 각 기재되어 있고, 피고가 2019. 7. 24.자로 소외 회사로 위 합계 1억 4,000만 원을 송금한 직후인 2019. 7. 31.자로 소외 회사가 다시 피고에게 1억 4,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며, 그 외에도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내역이 존재하는바, 을7호증 및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참고서류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금원의 차용 및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소외 회사가 2019. 1. 1. 피고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한 위 1억 6,000만 원은 C에게 지급된 돈으로 보이고, 결국 C는 2019. 1. 1.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돈을 피고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2).

나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앞서 인정한 사실, 앞서 든 증거들에 갑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C는 2019. 1. 1.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, 그러한 상황에서 처인 피고에게 1억

6,000만 원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아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변론종결일인 2024. 10. 10.까지의 원리금이 255,042,151원3)에 이르러 위 증여금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, 사해행위인 피고와 C 사이의 위 2019. 1. 1.자 증여계약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금액 1억 6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 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.

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,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.

재판장 판사 장지혜, 판사 이영범, 판사 권태관

1) 원고는 제1심에서 2019. 1. 1. 피고의 위 G은행 계좌에 1억 4,700만 원이 있었다는 점에 기초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. 1.1.경 체결된 위 금액 상당의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, 이 법원에 이르러 2019. 1. 1.자로 소외 회사가 피고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한 1억 6,000만 원이 피고와 C 사이의 2019. 1. 1.자 증여계약의 대상임을 특정하였다.

2) 그러한 이상 증여가 추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.

3) $\langle = \text{원금 } 1\text{억 } 3,340\text{만 원} + [3,340\text{만 원} \times \{0.2 \times (9\text{년} + 172/365\text{일})\}] + [1\text{억 원} \times \{0.05 \times (11\text{년} + 247/366\text{일})\}] \rangle$